

인천서구 출산장려 지원사업



○ 첫만남 이용권, 출산 지원금, 저소득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 지원

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신청기간	신청방법								
첫만남 이용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.1.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※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,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유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생아 당 200만원(일시금) /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 ▶ 사용종료일 : 아동 출생일 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 ※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,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~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, 사용기간(아동출생일로부터 1년)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※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,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								
출산 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2.1.1. 이후 출생 · 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, 출생 ·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생 순위별 출산 지원금 (계좌입금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첫째아</td> <td>둘째아</td> </tr> <tr> <td>30만원</td> <td>50만원</td> </tr> <tr> <td>셋째아</td> <td>넷째아 이상</td> </tr> <tr> <td>150만원</td> <td>250만원</td> </tr> </table> 	첫째아	둘째아	30만원	50만원	셋째아	넷째아 이상	150만원	250만원		
첫째아	둘째아											
30만원	50만원											
셋째아	넷째아 이상											
150만원	250만원											
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9.7.1.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,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▶ 출산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,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(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,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)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(서구 지역화폐 '서로e음'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※ 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								

○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신청기간	신청방법
아빠 육아휴직 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9.7.1.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 ※ 단, 2019.7.1. 이전부터 계속해서 휴직 중인 경우 7월부터 지급 가능 ▶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▶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▶ 『고용보험법』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 ※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※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(고용센터 발행) 필히 지참